

[서식 예] 답변서(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청구에서 정지조건부해제 항변)

답 변 서

사 건 2000가단000호,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000

피 고 ◇◇◇

귀원에 계속 중인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이유에 대한 답변

1. 인정범위 및 변소 요지

가. 피고는 소장 기재 청구원인 중 "원고와 피고가 2018. 1. 1. XX시 XX구 XXX동 XXXX번지의 XX 대 Xm²(이하'이 사건 토지'라고만 합니다) 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합니다.

나. 그러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이미 해제되었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위 매매계약에 기한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청구는 이유없다고 할 것입니다.

2. 해제 항변 등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대금으로 1



억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2018. 1. 1. 계약 당일 지급된 계약 금(1000만원) 외에, 나머지 9000만원에 대해서는 곧 지급하겠다는 당초의 약속과 달리 형편이 어렵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그 지급을 미루기만 하였습니다.

나. 이에 피고는 2018. 3. 1. 내용증명으로 "본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제반서류를 모두 준비하였으며, 이를 계약을 중개한 OO공인중개사에 비치하여 두었습니다. 귀하께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위 서류제공 등 등기이전절차 이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나머지 매매대금 잔금을 즉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3. 31. 까지도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알겠습니다."라고 하여,

다. 대금이행청구와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미리 해제의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라. 그러나, 원고는 2018. 3. 31. 까지 전혀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이후 계속된 피고의 연락조차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마. 이에,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이미 해제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3. 결어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1. 을 제1호증

통고서(내용증명우편)

2018. . .

피고 000(인)

OO지방법원 민사O단독 귀중



제출법원	본안소송 계속법원
제출부수	답변서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답변서의 제 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함(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법원은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음.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함(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상고심에서 피상고인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428조 제2항).
의 의	답변서는 피고나 피상소인이 본안의 신청에 대한 답변하려는 사항을 기재하여 최초로 제출하는 서면을 말함(민사소송법 제148조, 제428조, 제430조).
기타	답변서는 소장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하는데, ·청구취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로 작성 ·청구원인: 원고의 청구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구분, 부인할 부분에 대하여 이유를 밝히고, 인정할 부분에 대하여도 항변사유가 있으면 항변과 동시에 이유를 밝혀야 함. ·당사자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마저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결과 의제자백(자백간주)된 피고들과원고의 주장을 다툰 피고들 사이에서 동일한 실체관계에 대하여 서로 배치되는 내용의 판단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3789 판결). ·응소관할이 생기려면 피고의 본안에 관한 변론이나 준비절차에서의 진술은 현실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의 불출석에 의하여 답변서 등이 법률상 진술 간주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대법원 1980, 9, 26, 자용이나403 결정).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주장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의 답변서가진술되거나 진술 간주된 바 없으나 동 답변서가 제출된 점으로 미루어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툰 것으로 볼 것임(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1424 판결).